

**「공간정보 혁신정책 발굴 연구」  
제안요청서**

**2023. 7.**

**국 토 교 통 부  
국토정보정책과**

# ||| 목 차 |||

I. 연구용역 개요 .....	1
II. 과업 내용 .....	2
III. 과업수행지침 .....	3
IV. 입찰 계약방식 및 참가자격 .....	9
V.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0
VI. 사업자 선정방법 .....	12
VII. 제안관련 서식일람 .....	18

## 1. 연구명 : 공간정보 혁신정책 발굴 연구

### 2. 과업의 배경

- 우리 부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공간정보를 기업 등에 개방하며, 수요기관에게 융복합 활용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 교통, 환경, 방재 등 국토단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트윈국토의 조기 완성'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추진 중

\* [국정과제 38] (국토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공간정보 기반의 국내외 혁신사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하여, 미래 혁신산업(UAM, 자율차 등)과의 연계·육성·지원에 한계로 작용
  - 영세업체\*, 측량 중심 등 전통적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他 산업과의 연계, 지원 등 혁신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

\* 매출액 10억 미만 60.9%(3,408개), 종사자 10인 미만 60.4%(3,337개) ('20년 기준)

- 체감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한 실증을 유도하여 성공적인 활용사례 홍보·확산 필요
  - 그에 따라 공간정보 분야의 법·제도 개선사항, 신규 정책사업 발굴 등 핵심이슈 논의를 위해 「공간정보 미래혁신 포럼\*」도 운영 중

\*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간정보 분야 정책발굴을 위한, Think Tank 수행 중

- 미래 혁신산업(UAM, 자율차 등) 발전으로 점차 고도화·다변화되는 공간정보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 공간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정보 신규정책 개발 및 법·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 다양한 국가의 고정밀 공간정보 및 서비스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는 연구 추진

### 3.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4. 사업 금액 : 44백만원

## II 과업 내용

### 1. 국내외 공간정보 기술현황 분석

- 현재 공간정보 민간분야 기술개발 수준, 기술 확산을 위한 애로사항, 타분야와의 융복합 연구 등 국내외 공간정보 분야 기술현황 조사
- 공간정보와 연계 및 융복합되는 기술별 수준 및 장단점을 진단하고, 장애가 되는 요인 등을 분석하여 발전 가능성과 개선방안 도출

### 2. 공간정보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국내 생산·유통·활용·관리 등 공간정보의 생애주기별로 법·제도 적용 사항을 파악하여 민간 혁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
-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공간정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본법』 상 디지털트윈, 국토위성 등 주요 개념을 법제화하는 방안 검토

### 3. 디지털트윈 정책 시사점 도출

- 민간과 공공에서 디지털트윈이 도입·활용된 사례를 폭넓게 조사하고, 장단점, 확산장애 요인 등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도출
- 자율차, 배달로봇 등 혁신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인터뷰, 간담회 등 추진, 제도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 공간정보 분야 아젠다 발굴 및 고도화

#### 4.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 향후 공간정보 분야의 데이터, 기술, 정책 등 수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검토
- 공공과 민간의 공간정보 구축 역할 분담 및 연계방안, 혁신 아이템 발굴, 기반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 III

## 과업 수행지침

### 1.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한다.
- 과업수행은 동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일정계획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전월 추진실적 및 금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및 보고계획에 따라 발주처에 성과품을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세부지침

### 가.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 나. 용역비 조정 및 사용

-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라. 과업수행자의 자격 및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및 자격조건

구 분	업무범위	자격조건
책임 연구원	과제별 연구 총괄	과제별 관련분야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 후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연구를 총괄할 수 있는 자
연구원	과제별 자료분석 및 전문연구 수행	과제별 관련분야 전문자격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연구 보조원	과제별 기초자료 작성 및 연구지원	과제별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마.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복제 소유 및 판매할 수 없다.

#### 바.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사.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수정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나. 성과품 및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부수(부)	비 고
과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제출	3	
결과보고서 초안	준공 1개월 전	3	
연구과제 최종결과보고서	준공 시 제출	50	전산파일(CD 등) 및 인쇄물



#### 4. 예정공정표

추진내용	추진일정(월)				
	8	9	10	11	12
국내외 공간정보 기술현황 분석					
공간정보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디지털트윈 정책 시사점 도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보고회	착수				최종

#### 5. 보안대책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과업수행 대표자(협력기관 포함)의 보안각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1)을 이행한다.

- 누출금지대상정보(붙임2)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 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한다.

## IV

### 입찰 계약방식 및 참가자격

#### 1.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 V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30매(단면)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20분 이내로 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3, toheejin@korea.kr)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4.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나.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다.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 시 제출하여야 함

## VI

## 사업자 선정방법

### 1. 선정방식 및 절차

####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부터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나. 선정절차

###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기술 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함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함
-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

###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2.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평가방법	점수
1	연구인력	○ 관련 연구인력 보유 현황	계량평가	5
2	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경력	“	10
3	신인도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	5
4	기술·지식 능력 (과업접근 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 평가	30
5	사업수행 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20
6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수행경험, 학력 등	”	10
7	지원기술·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연구 성과물 활용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10
8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10
계				100

## 2)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 연구인력 보유현황(5점) : 수행인력의 전문성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점
연구인력 보유현황	5.0	15인 이상	5
		10인 이상~15인 미만	4.5
		5인 이상~10인 미만	4
		5인 미만	3.5

※ 연구인력 : 해당업체 정규직원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있는 연구인력

○ 책임연구원 경력(10점)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점 수	10	9	8	7

※ 책임연구원 평가는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에 대한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등급	참여 연구진 평가기준
(가)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나)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2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책임연구원의 해당분야는 공간정보 관련사업(연구용역, 조사, 평가 등)에 한함

○ 신인도(5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구 분	0건	1건	2건	3건 이상
배점	5.0	4.5	4	3.5

3)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항목 구분	배점	평가 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기술·지식능력 (과업접근방법)	30	30	24	18	12	6
사업수행계획	20	20	16	12	8	4
투입인력	10	10	8	6	4	2
지원기술· 사후관리	10	10	8	6	4	2
기타항목	10	10	8	6	4	2

#### 4)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다. 기술능력 평가 시 평가 착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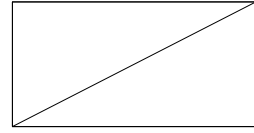
- 해당분야 업무수행 실적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수행조직체계 및 연구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 착안사항으로 하여 평가

#### ※ 유의사항

- 점수계산은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 계량평가는 공동도급 시에는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한다.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경력은 평가하지 아니한다(단,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1. 과업제안서(표지)
2. 회사소개서
3. 관련 연구 분야 인력현황
4. 본 과업 연구진 참여 인력현황
5. 연구진(책임연구원) 이력사항
6.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7. 청렴계약서
8. 보안서약서

<양식 1>



# 과업제안서

용역명 : 공간정보 혁신정책 발굴연구

기관명 : (인)

<양식 2>

# 회 사 소 개 서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2년	2021년	2020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양식 3>

##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해당업체의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보유현황

## 본 과업 연구진 참여인력 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박사학위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양식 5>

##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령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령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본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양식 6>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업체명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을 기재

<양식 7>

#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